

변리사 시험장용 노트 - 산업재산권법

김영남 변리사



## [시험장용 판례]

√ **드리는 말씀** : 시험장용 판례에는 특허법 판례(20 개), 상표법 판례(5 개) 디자인보호법 판례(1 개)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허법 판례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등 문제풀이에서 반복적으로 보지 않아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문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법 판례와 디자인보호법 판례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I. 특허법 판례

#### 1. 공시송달

가.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재외자의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나.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후3508 판결).

####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 후 특허료의 납부 또는 면제 시에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지식재산처에 비치된 특허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지식재산처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특허가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 3.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엄격한 특허요건 요구

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위와 같이 엄격한 특허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행발명에 이미 개시된 특정한 효과를 지닌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하위개념의 선택이 선행발명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적 효과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략) 이처럼 선행발명이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효과를 가지는 점에 특허성을 인정하는 선택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선행기술과 비교해서도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중략)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위와 같은 엄격한 특허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이든 지켜져야 하는 법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이를 반대해석하면, 선택발명이 본질적으로 중복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때는 엄격한 특허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사실상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이하 구분하지 않고 '권리범위'라고 통칭한다)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는 중복발명으로서의 기존 선택발명 법리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일반발명으로 취급하여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효과 기재 또한 일반발명의 그것과 같은 정도만 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 4.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

#### 5. 제42조 제4항 제2호 - 명확하고 간결하게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는 (i)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ii)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iii)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 6. 보정

##### (1) 새로운 거절이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는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으로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사관으로서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2) 청구범위의 감축**

특허의 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므로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4765 판결).

**7. 특허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특허법은 제132조의17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결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특허사정이 그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허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지식재산처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4274 판결).

**8. 허가 등에 따른 연장 -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가.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2호가 연장등록의 무효사유로서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지만, 그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연장등록출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증명자료임에 비추어 그것이 누락된 채로 연장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연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와 달리 위 법률 조항이 허가 등을 신청한 통상 실시권자가 그 신청 당시부터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고 있어야만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2017후851(병합), 2017후868(병합), 2017후875(병합) 판결).

**9. 허가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중략)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i)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ii)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iii)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10.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

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는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를 규정한 특허법 제89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라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 중 하나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을 규정한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관련 약사법령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중 활성을 가지면서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상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의미한다.

나. 한편 그 자체로는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기존에 품목허가된 의약품의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에 결합되어 의약품의 효능·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로서의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합물 전체를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11. 공유특허권자 중 일부가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인지 여부**

특허권의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278조, 제267조), 이와 같이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1449 판결).

**12. 특허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경우라도, 특허발명의 실시금지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특허권자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특허발명 실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이후에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뿐이다. (중략) 이때 계약상대방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구체적인 형태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상대방이 특허권자와의 의사 합치에 따른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70105 판결).

**1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 -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인 경우**

특허법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35조 제1, 2항), (i)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대상발명의 개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ii) 확인대상발명을 복수로 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두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인데, 특허법상의 심판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은 관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7조 참조), (iii) 관련되는 복수의 청구를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심판경제상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라는 것만으로 바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특허법원 2020. 3. 13. 선고 2019허5478 판결).

참고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인 경우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도 있다(특허법 통합기본서 457쪽 참고)

**1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 -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리는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15.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 -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 사이의 동일성**

가.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 16.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 -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 17.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조약우선권 기초가 되는 발명의 내용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되고 이후 이에 입각하여 특허권 설정등록까지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효 부분을 포함하는 특허를 본래 유효로 되어야 할 범위 내에서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620 판결).

#### 18. 정정심판

한편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가 제기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정정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정정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점은 있다. 그러나 이처럼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를 인용한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그 특허발명에 대한 별도의 정정심판청구가 있고, 그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 특허법 제133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허5560 판결).

#### 19.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절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20. 공지에외규정의 근거가된 공지기술로부터 자유기술의 항변 가부**

공지에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에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II. 상표법 판례**

**1.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그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공동보유자가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지표지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보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 적용하여 공동보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표지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그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2. 제110조 제6항 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은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자유심증주의하에 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3.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 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 4.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으나 갑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등록상표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5.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제3자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 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 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 Ⅲ. 디자인보호법 판례

#### 1.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기본적으로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후10012 판결).

**[시험장용 개정법]**

**I. 특허법**

**1. 특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p>특허법상 실시의 태양에 "<b>수출</b>"이 빠져 있음</p> <p>제2조(정의),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p>	<p>특허법상 실시의 태양에 "<b>수출</b>"을 추가</p> <p>제2조(정의),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p>
<p><b>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b></p> <p>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b>존속기간</b>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b>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b></p> <p>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b>존속기간(제92조의 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b>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p>
<p><b>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b></p> <p>&lt;신설&gt;</p>	<p><b>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b></p> <p>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p> <p>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p> <p>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p>
<p><b>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b></p> <p>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p><b>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b></p> <p>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p>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b>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b>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p>	<p>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b>연장의 기간</b>을 초과하는 경우</p>
<p>&lt;신설&gt;</p>	<p><b>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b></p>
<p><b>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 심판)</b></p> <p>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 심판)</b></p> <p>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b>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b>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p>	<p>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b>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b>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p>
<p>&lt;신설&gt;</p>	<p><b>6. 제 90 조제 7 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b></p>
<p>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b>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b>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p>	<p>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b>제 89 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b>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p>
<p>&lt;신설&gt;</p>	<p><b>⑤ 연장등록이 제 1 항제 6 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b></p>

<p><b>제93조(준용규정)</b>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p>	<p><b>제93조(준용규정)</b>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b>제78조제1항·제3항</b>,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b>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 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b></p>
<p>&lt;신 설&gt;</p>	<p><b>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b>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230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230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b>또는 제229조의3</b>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신 설&gt;</p>	<p><b>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b></p>

2. 특허법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75호, 2025. 5. 27,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제126조의2(구체적 <b>행위태양</b> 제시 의무)	제126조의2(구체적 <b>행위의 내용·방식·형태</b> 제시 의무)

3.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 [총리령 제579호, 2024. 10. 31,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p>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b>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b>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b>때에는</b>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b>발명자의 기재를 일부</b>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b>경우에는 발명자를</b>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b>다만, 특허출원인은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b></p>
<p><b>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b>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b>제38조(심사의 순위)</b>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b>에 따라 심사한다.</p>	<p><b>제38조(심사의 순위)</b>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식재산처장</b>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p>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심사의 순위)]**

① 출원(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특허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심사자문 위원에게 협조 또는 의견을 의뢰한 경우
3. 특허청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과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출원의 경우
4.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경우

4.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1] [총리령 제 609 호, 2025. 7. 11,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b>제16조(기간의 지정)</b>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b>2개월</b> 이내	<b>제16조(기간의 지정)</b>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b>4개월</b> 이내 [참고] 실용신안 : 4 개월, 상표/디자인 : 2 개월

√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중 중요한 것만 선별한 것입니다.

**II. 상표법**

1. 상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b>제57조(출원공고)</b>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b>2개월간</b>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b>제57조(출원공고)</b>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b>30일간</b>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b>제60조(이의신청)</b>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b>2개월</b>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b>제60조(이의신청)</b>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b>30일</b>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b>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b>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b>3배</b>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b>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b>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b>5배</b>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 상표법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65호, 2025. 5. 27,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p><b>제2조(정의)</b></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b>제2조(정의)</b></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p>	<p><u>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u></p> <p>라.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p>

3. 상표법 시행령[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00호, 2023. 12. 19,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p><b>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b></p> <p>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p>	<p><b>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b></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Ⅲ. 디자인보호법**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p><b>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b></p> <p>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b>3배</b>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p>	<p><b>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b></p> <p>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b>5배</b>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p>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2호, 2025. 5. 27,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p><b>제37조(디자인등록출원)</b></p> <p>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2. 디자인의 설명 <b>및 창작내용의 요점</b></p>	<p><b>제37조(디자인등록출원)</b></p> <p>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2. 디자인의 설명</p>
<p><b>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b></p> <p>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p>	<p><b>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b></p> <p><b>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b></p> <p>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p>
<p><b>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b></p> <p>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p>	<p><b>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b></p> <p>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b>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b>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b>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b></p>
<신 설>	<p><b>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b></p> <p>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신 설>	<p><b>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b></p>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p><b>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b></p> <p>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p>	<p><b>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b></p> <p>① 이해관계인(<b>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b>)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p>
<p>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lt; 단서 신설 &gt;</p> <p>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p>	<p>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b>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b></p> <p>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p>
<p><b>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b></p> <p>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b>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b>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b></p> <p>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3.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99호, 2023. 12. 19,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p><b>제6조(우선심사의 대상)</b></p> <p>2. 녹색기술[<b>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b>]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p>	<p><b>제6조(우선심사의 대상)</b></p> <p>2. 「<b>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b>」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p>
<p>8. <b>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b></p>	<p>8. 「<b>국가연구개발혁신법</b>」에 따른 <b>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b></p>
<p>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p>	<p>삭제</p>
<p>1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p>	<p>삭제</p>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	--

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 2. 12, 일부개정]

구법	개정법
<p><b>제42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b>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삭 제>
<p><b>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b>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b>창작자 중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니하거나</b> 잘못 적은 경우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b>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b>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b>창작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b>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b>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b></p>

**IV. 특상디 공통**

구법	개정법
특허청	지식재산처
특허청장	지신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령	총리령
근로자의 날	노동절

## [기타 - 디자인보호법 출제가능성 100%]

### 1. 출원서

- (1) 출원서에 부분디자인의 취지를 기재 - 삭제
- (2) 출원서에 화상디자인의 용도를 기재 - 삭제

### 2. 도면 등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 삭제

###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부분디자인 - 부분에 관한 명칭 허용

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 허용되는 경우 : 컵, 컵의 부분, 컵의 손잡이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컵의 코너, 컵의 모퉁이, 컵의 중앙, 컵의 상부, 컵의 하부 등

### 4.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원칙 : 비유사 // 예외 : 유사(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바로가기 클릭

## 김영남 변리사 2차 패키지

### 2차 특상디 패키지

#### 특상디 전과정 제공

특 : 통합(기본+기초GS) + 실전GS + 판례 + 기출  
 상 : 통합(기본+기초GS) + 실전GS + 판례 + 기출  
 디 : 통합(기본+기초GS) + 실전GS

인강 : 200만 -> 15만

실강 : 200만 -> 35만

실강은 복습용 인강도 제공

### 2차 특상 패키지

#### 특상 전과정 제공

특 : 통합(기본+기초GS) + 실전GS + 판례 + 기출  
 상 : 통합(기본+기초GS) + 실전GS + 판례 + 기출

인강 : 160만 -> 10만

실강 : 160만 -> 30만

실강은 복습용 인강도 제공

**특별할인 event : ~ 3월 31일 (화) 까지**

인강 수강신청은 접수중이고, 실강 수강신청은 1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 [2차 강의일정]

	3월	4월	5월	6월
특허법	통합 (기본_기초GS)	실전GS	판례심화	기출사례
상표법	통합 (기본_기초GS)	실전GS	판례심화	기출사례
디자인		통합(8회) (기본_기초GS)	실전GS	